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1617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11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,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835,79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 판결)

3. 일부기각부분

원고는 피고들에게 2023. 5.경부터 2023. 10.경까지의 미납 전기세 835,790원도 구하고 있으나,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관련한 전기세 미납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유인한

별지